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31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배현진·정성국·김형동

고동진・김 건・김소희

우재준 • 박정하 • 김성원

박정훈 · 안상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 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이 경우 납부 유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⑧ (생 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
		무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대출원리금 납부를 유
		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유
		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u>있다.</u>
<u>⑨</u>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